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운수 관리주임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귀사도중 운전부주의로 바리케이트를 추돌하면서 굴러 떨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

(86-67 호 86.4.21.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 7 동

성명: 이 ○ ○

소속: ○○운수(주)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상 동

성명: "

소속: "

원 처 분 청: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주 문

이 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6.2.7.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

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운수(주) 소속 관리주임으로서 85. 11.25. 01:00경 강동구 천호동 경인에너지 가스충전소 앞 고압케이블 공사현장 전방에서 동사 소속 서울1사○○○○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귀사 도중 운전부주의로 바리케이트를 추돌하면서 굴러떨어져 재해가 발생되어 청구인은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9조의3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사고차량 서울1사 ○○○○호 택시는 운전기사가 “이○○”로서 당

일 사고차량이 고장나자 정비소에 입고시켰으며, 청구인은 당일이 “이○○”의 생일임을 알고 생일연회에 참석하여 관리부장 “임○○”등 직원들과 음주를 한 후 청구인이 운전하여 직원 2명을 편승 귀가시키고 가스를 충전한 후 귀사하던중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관리 주임으로 당일 야간 근무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생일 연회에 참석하는 등 명백한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재해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처분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재심사관 역시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평소에 운행중이던 차량이 연료 주입을 하기전 사고고장등으로 운전기사가 귀사하여 수리의뢰를 하고 귀가하므로 차량 수리를 마친후 정비사 또는 청구인이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넣어 가지고 다음날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왔으며 재해 당일도 ○○○○호에 연료를 주입하기 위하여 운행도중 동료 “이○○” “조○○”의 집이 주유소가는 도중이기에 집근처에 내려주고 연료 주입후 귀사도중 노면에 모래가 깔려있어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86.3.24. 이 ○ ○)
2. 원처분청 의견서(86.3. 노동부 서울동부 지방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86.3.14. 송 ○ ○)
4. 요양신청서(86.11.26. 이 ○ ○)

5. 재해사고 및 보험급여의 실시조사복명서 (86.2. 정 ○ ○)

6. 진 술 서(85.12.14. 관리부장 임○○)

7. 문 답 서(86.2.8. 이○○, 전○○)

8.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85.11.25. 차량 사고로 인한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직책은 관리주임이고 주임무는 차량의 입출고 관리와 배차 일보정리 및 자재구입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당일에는 야간 근무중으로 02:00에 관리장과 교대하게 되어 있으나, 사고차량 서울1사○○○○호 운전기사는 “이○○”로서 85.11.24. 19:30경 운행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회사 자체 정비고에서 정비후 22:00경 “이○○”이 자신의 생일 연회를 위하여 “○○○○”주점에 차량을 운행도착하여 청구인과 합석한 후 6명이 맥주 8병을 나누어 마시고 01:00경 술집을 나와서 동료근로자 “조○○” “이○○” 2명을 강동구 천호1동 집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중곡주유소에서 32.3리터를 주유한 후 회사로 돌아오던중 01:30~02:00경 사고지점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은 업무수행중 발생된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85.12.17. 회사상무 “전○○”의 문답서와 86.2.8. 사고차량 운전기사 “이○○”의 진술내용중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동료 근로자 생일연회 술좌석에 참석하기 위하여 회사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업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직원 출퇴근용이 아닌 영업용 입고 차량을 사업주 지시없이 임의로 동료 근로자들을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은 업무수행을 위한 운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 유가 없다고 판정한다.

A화학 근로자가 사출기 휠타 고장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동 공장과 함께 세들어 있는 B화학 사업주가 사출기를 고쳐 줄테니 대신 B화학의 분쇄기를 청소해 달라하여 동 기계를 청소하던 중 동 공장과 함께 세들어 있는 C프라스틱 사업주가 부주의로 스위치를 넣어 분쇄기 칼날에 좌측 전박부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은 경우

(86-17 호 86.3.24.취소)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경남 창원군 남지읍

성명: 변 ○ ○

소속: A화학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상 동

성명: "

소속: "

원 처 분 청: 노동부 마산 지방사무소장

주 문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장이 85.8.27.자 “변○○”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마산 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5.8.27.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A화학 소속 근로자로서 85.7.30. 08:05경 동사 사출기 휠타 고장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동 공장과 함께 세들어 있는 B화학 대표 “조○○”이 출근하여 자신이 고장난 A화학 사출기 휠타를 수리할테니 그 대신 B화학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쇄기를 청소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청구인이 분쇄기를 청

소하던중 동 공장과 함께 세들어 있는 C프라스틱 대표 “정○○”이 부주의로 분쇄기 전원스위치를 밟아 분쇄기가 작동되면서 회전하는 분쇄기 칼날에 좌측 전박부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보험법 제9조의3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A화학, B화학, C프라스틱 등 3개사가 각기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동일 건물내에서 사업을 하므로 각기 다른 사업주로서, 청구인은 A화학 사업주 “김○○”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나, 분쇄기 청소를 시킨 “조○○”은 A화학 “김○○”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사업주의 사전승인 없이 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적행위에 기인한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분쇄기 청소를 시킨 “조○○”과 청구인의 사업주

“김○○”은 형식상으로는 사업주등록을 달리 하는 별도의 사업주이긴 하나 동일 사업장내에서 기계를 같이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주 “김○○”은 “조○○”이가 기계를 손봐주는 댓가로 일당 5,000 원 내지 10,000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하였으므로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조○○”이가 A화학의 고장난 휠타를 수리하는 동안 청구인이 “조○○”의 지시에 따라 분쇄기를 청소한 것은 비록 청구인의 고유의 업무는 아니라고 할 지라도 사업주를 위한 업무이므로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부상이 업무상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86.1.15. 변○○)
2. 원처분청 의견서(86.1.17.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85.11.15. 임○○)
4. 요양신청서(85.8.27. 변○○)
5. 조사복명서(85.8.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장)
6. 문답서(85.8.24. 변○○)
7. 자술서(85.8.24. 김○○, 조○○)
85.8.26. 정○○, 최○○)
8. 문답서(86.3.4. 김○○)
9.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을 심리하건대, 본 재해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5.7.30. 08:05경 출근하였으나, 사출기 고장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 열에 있던 B화학 대표 “조○○”에게 사출기가 고장난 사실을 말하자 “조○○”은 고장난 A화학 사출기 수리를 시작하면서 청구인에게 분쇄기 청소를 부탁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 중에 C 프라스틱 대표 “정○○”이 다가와서 부주의로

분쇄기 작동 스위치를 밟아 왼팔이 분쇄기에 말려들어가 좌측 전박부가 절단되는 재해를 당하였음이 확실하다.

한편 동 재해와 관련된 작업환경 및 상태를 살피건대, 동 재해 발생장소는 A화학, B화학, C 프라스틱 등 3개업소가 건평 40평의 건물을 300 만원에 임차하여 각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출기 1대씩을 설치하여 칸막이 없이 공동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며, 사고 원인이된 분쇄기는 청구인이 소속한 A화학의 소유물이나 3개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전기요금 등도 공동으로 분담하며 분쇄기의 청소는 분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소에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고 A화학 대표 “김○○”과 “조○○” 사이에는 이미 “조○○”이 A화학 기계를 손봐주고 댓가로 1일 5,000원씩 지급하기로 사전 약속이 되었던것 등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당일 “조○○”이 고장난 A화학 기계를 수리해주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하겠으며, 또 “조○○”이 A화학 기계를 수리하는 동안에 “조○○”이 사용하고자 하는 분쇄기 청소를 A화학측에 요청하였다면 A화학 대표 “김○○”이 현장에 있을 경우 이 같은 “조○○”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청구인이 분쇄기를 청소하게 된 것은 고장난 A화학의 기계를 수리하여 작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조○○”의 요구에 응한 것이므로 이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청구인 자신을 위한 사적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A화학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수반하는 일이므로 청구인의 명백한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가 아닌 이상 본 재해는 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상을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